

한국젠더법학회 학회지 투고규정

제정 2007년 1월 13일

개정 2009년 12월 5일

개정 2012년 6월 30일

개정 2020년 1월 30일

제1조(원고의 작성)

- ① 투고 원고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 중의 하나로 작성한다. 이 중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로 작성된 원고의 경우 한글 원고를 함께 기재할 것을 권장한다.
- ② 한글 논문의 경우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A4 25매 내외) 내외로 하며, 국문 초록은 400자 이내, 외국어 초록은 200단어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 30.>
- ③ 외국어 논문의 경우, 논문의 분량은 더블스페이스 A4 30매 내외로 하며, 외국어 초록은 200단어 이내로 하고 국문초록은 400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 30.>
- ④ 전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논문의 분량은 한글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80매를, 외국어 논문의 경우 더블스페이스 A4 35매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 1. 30.>
- ⑤ 서평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로 한다.
- ⑥ 원고의 내용은 표지, 국문초록, 본문, 각주, 참고문헌, 표 및 그림, 외국어 초록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0. 1. 30.>
- ⑦ 논문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첫 번에 한해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 원문 옆의 괄호 안에 쓴다. <개정 2020. 1. 30.>
- ⑧ 국문초록 및 외국어 초록 하단에는 각각 국문 및 외국어 색인어를 5개씩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제2조(심사의 거부)

- ① 원고는 젠더법학의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가능한 한 일반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고, 성별, 종교, 신체조건, 혼인 여부, 성적 지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용어와 표현을 담지 말아야 한다. 만약 원고가 원고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작성되었거나, 차별적 용어와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 등 투고자의 신상정보는 원고투고신청서에만 기재하여야 하고, 원고의 내용에는 투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원고의 내용에 투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조(논문의 틀)

논문의 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① 원고는 한글(1997 이후 판) 프로그램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원고 용지는 백색의 A4용지를 세로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 그림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여백의 크기는 위쪽: 35mm, 아래 쪽: 35mm, 좌측: 30mm, 우측: 30mm로 한다.
- ④ 글자의 크기는 11포인트(각주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 장평은 95%, 글자 간격은 0%, 줄 간격은 160%로 하고, 글자체는 신명조체를 사용한다.
- ⑤ 본문에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에는 한 글자(혹은 두 칸) 뒤로 들여쓰기한다.
- ⑥ 쪽 번호는 원고 하단의 중앙에 위치시키며,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 ⑦ 본문의 소제목은 1단계는 I, 2단계는 1, 3단계는 (1), 4단계는 1), 5단계는 ①의 순으로 구분한다.

제4조(본문의 주)

- ① 본문에 내각주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내각주의 사용 방법은 학회의 표준적인 방법에 따른다.

제5조(각주)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① 논문이 인용된 책은 논문 제목 뒤에 쓴다.
예) 최경석(2005), “인간배아연구의 도덕성 논란과 인간생명의 시작”, 『한국의료윤리교육 학회지』 제8권 제1호, 1쪽 이하.
- ② 앞에 인용된 글을 다시 인용할 때에는 위의 글(주)로 표시한다.
- ③ 판결인용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예) 대법원 ****. **, ** 선고 **도** 판결
예) 대법원 ****. **, ** 선고 **누** 결정
헌재 ****. **, ** 선고 **헌마** 결정

제6조(참고문헌)

참고문헌 목록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①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 ② 참고문헌 제시 순서는 표기 언어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로마자 표기의 구미어, 기타어(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순서로 배치한다. 한국어 문헌의 저자이름은 가나다 순으로 제시하고, 중국어는 획순으로, 기타 다른 외국어 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표기를 한다.
- ③ 동일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년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 ④ 참고문헌에는 진한 글씨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 ⑤ 참고문헌의 서명, 출판사 등의 사이에는 쉼표를, 마지막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 ⑥ 참고문헌은 내어쓰기 한다.
- ⑦ 발행 연도는 괄호 안에 넣는다.
- ⑧ 저자명이 영문인 경우 성(姓)을 먼저 쓰고 쉼표를 찍는다. 단,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저자명만 이 지침에 따르고 두 번째부터는 영문식으로 표기한다.
- ⑨ 출판사 소재 도시와 출판사 이름 사이에 콜론(:)을 찍고 한 칸 띄어 쓴다.

⑩ 따옴표 다음에 쉼표를 찍는 경우 한글은 닫는 따옴표 뒤에, 영문은 닫는 따옴표 안에 찍는다.

⑪ 단행본이나 잡지에 실린 논문은 맨 끝에 페이지를 명기한다. 이 때 한글인 경우에는 페이지 숫자 다음에“쪽”이라고 쓰고, 영문의 경우 한 페이지면“p.”로 여러 페이지“pp.”로 숫자 앞에 쓴다. 페이지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줄표(-)를 넣는다.

⑫ 참고문헌의 종류에 따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단행본

이은영(2006),『법여성학 강의(제3판)』, 서울: 박영사.

Chamallas, M.(2003), *Introduction to Feminist Legal Theory(2nd edition)*, New York: Aspen Publishers.

2. 학술 논문

강선미·야마시타 영애(1993), “천황제 국가와 성폭력”,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제9집, 52-89쪽.

Ghadially, Rehana(2005), “Devotional Empowerment: Women Pilgrims, Saints and Shrines in a South Asian Muslim Sect,”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1(4), pp.79-101.

3. 번역서

Weedon, Chris(1987), *Feminist Practice & Poststructuralist Theory*, 조주현 옮김, 『여성해방의 실천과 후기 구조주의 이론』,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1993.

4. 출판 예정 논문 및 서적

출판 예정인 논문이나 서적은 출판 연도 대신 간행 예정이라고 표기한다.

5. 학위논문

홍양희(2005), “조선총독부의 가족정책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학술대회 발표문

장명선(2008),“적극적 조치의 합헌적 요건”, 한국젠더법학회·이화여대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제7차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젠더법학에서의 성평등의 이론과 실제(Ⅲ)』자료집 발표문(2008. 4. 12).

7. 인터넷 자료

여성부(2008),“여성 e news”, <http://www.mogef.go.kr> (검색일: 2008.4.16)

8. 신문기사·잡지

김선희, <여성신문>,”성폭력 근절 남성도 뵈다”, 2004.1.3.

Walker, L. A. “The battered woman,” *New York Times*, 23 July, 1993.

제7조(표, 그림, 사례)

① 표 제목은 표의 위쪽에, 그림 제목은 그림 아래쪽에 넣고 표와 그림은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붙여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이 표기한다.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출처:”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② 면접사례 등을 인용할 경우“사례”라는 글자와 사례 번호를 괄호 안에 넣는다. 이때 “사례”라는 글자와 번호 사이는 한 칸 띄어 쓰고, 마침표는 괄호 바깥에 찍는다. 인용문 및 사례 번호 등은 모두 본문과 같은 글씨체로 한다. 인용문의 글자크기는 9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30.>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